



##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신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조국 교수

(경유)

제목 조사 결과 알림

---

1. 접수번호 : 2013-1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사안
2.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귀하의 논문(형사정책 20권 1호(2008.6) 등 총 12편)에 대해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 의혹 사안

사안 1. 형사정책 20권 1호(2008.6)에 게재된 논문의 영문 초록이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2008.4)에 게재된 논문의 본문 내용과 유사함

사안 2. Santa Clara 저널에 게재된 논문(2006) 본문이 서울대 법학에 게재된 논문(2005)의 영문제목 및 초록과 일부 유사함

사안 3. UT Soft Law review 저널에 게재된 논문(2009) 본문이 서울대 법학에 게재된 논문(2007)의 초록과 일부 유사함

사안 4. UT Soft Law review 저널에 게재된 논문(2009) 본문이 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2007)의 초록 내용과 일부 유사함

사안 5. 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된 논문(2001)의 초록이 여러 해외 문헌의 내용과 유사함

사안 6. 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된 논문(2002)의 초록이 여러 해외 문헌의 내용과 유사함

사안 7. 형사정책 제20권 1호(2008.6)에 게재된 논문의 본문 내용이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2008.4)에 게재된 논문의 본문 내용과 유사함

사안 8. 다음의 조국 교수의 국문 논문 2편과 영문 논문 2편이 각각 동일한 내용임

- 인권사회복지학회 발표문(2008)과 형사정책 게재 논문(2008)

- 와세다대 발표문(2009)과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게재 논문 (2008)

사안 9. The Review of Korean Studies(2003)의 본문 내용이 형사정책에 게재된 논문(2001)의 초록과 유사함

□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사항

○ 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의혹에 대하여

사안 1에서는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의 일부가 이미 공간된 영문 논문의 본문의 일부와 유사한데 출처 표시가 없고, 사안 2, 3, 4, 9에서는 각 영문 논문의 본문의 일부가 이미 공간된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의 일부와 유사 또는 동일한데 출처 표시가 없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사안 4에서는 동일한 1개 문장이 형법 조항을 번역한 것이고, 나머지 사안들에서도 연속된 5문장 이상이 유사한 경우는 없으므로, 연구윤리지침 제8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제2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타인의 연구 성과 사용 의혹에 대하여

사안 5에서는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의 첫 번째 문단의 5개 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미국의 판결문의 문장들과 대동소이하며, 두 번째 문단의 첫째, 둘째 및 셋째 문장은 각각 출처 표시 없이 서로 다른 3개의 미국 논문의 문장과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안 6에서는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의 첫 번째 문단 중 둘째, 일곱째 및 여덟째 문장의 각 일부가 출처 표시 없이 1개의 미국 논문의 문장과 동일하며, 셋째 문장부터 여섯째 문장까지 4개의 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또 다른 1개의 미국 논문의 문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타인이 저술한 2개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구윤리지침 제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 5의 영문 초록 두 번째 문단의 첫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본문에서 문헌인용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그 영어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된 부분이 모두 영문 초록에 한정되어 있어 논문 전체의 학문적 독자성을 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인용표시를 한 후 다시 영문 초록에 인용표시를 하는 것은 관행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국문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의 논문심사 관행상 영문 초록은 논문의 취지를 영문으로 요약하여 외국독자에게 논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논문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논문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점(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참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반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판단함.

○ 중복게재 · 출간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의혹에 대하여

사안 7에 관하여, 문제된 영문 논문에는 아시아의 동향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문 논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대신 한국에서의 사형폐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양 논문의 대상 독자가 각기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유사한 문장이 비교적 많은 제3장은 그 제목에 이미

출판된 논문이 인용되어 있어 새로운 논문으로 독자를 오인시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제3장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부분적으로 동일한 문장들이 발견되지만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연구윤리지침 제9조(중복게재·출간의 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 단락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한 부분이 없고 제3장 이외의 많은 부분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지침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제8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사안 8의 첫 번째 경우에는 학술대회 발표문이 학술지(인권복지연구)에 게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게재된 논문의 상단에 학술대회 발표문임이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학술지에 게재된 정황이 인정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발표문이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연구윤리지침 제9조(중복게재·출간의 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끝.

##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장

이준구

협조자

시행 연구진실성위원회- 49 ( 2013.12.24 ) 접수 ( )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880-5153 /전송 (02)882-5153 /

/ 비공개